금융위원회 고시 제2016-44호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 중 "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의 제목 "(환율위험관리)"를 "(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로 한다. 제6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3조의2(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 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 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외 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한다)을 100분의 8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직전 반기 종료일 현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0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제63조의2제 1항 단서에 따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삭제한다.

제64조의2를 삭제한다.

제68조제2항 중 "제64조, 제64조의2"를 "제63조의2, 제64조"로 한다.

제69조의 제목"(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를 "경우에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재"를 "조치"로, "제재를 면제"를 "제재 등을 감면"으로 한다.

제70조의 제목 "(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를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4조, 제64조의2"를 "제63조의2, 제64조"로, "2회이하(단,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간 4회이하)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를 "2회이하인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제11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4조, 제64조의2"를 "제63조의2, 제64조"로, "경우에는 제64조 및 제65조에"를 "경우에는 제63조의2, 제64조 및 제65조에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7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 가. 과거 1년동안 3회 위반한 경우: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 는 비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한 비율
 - 나. 과거 1년동안 4회 위반한 경우: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비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비율

제7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만기 3개월이내"를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계약만기 3개월이내"로, "때까지"를 "때까지(2개월 이내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가중사유에 따라 업무 정지 기간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제70조제3항제1호 중 "제64조제1항제1호"를 "제63조의2제1항 본문"으로, "100분의 95이상"을 "제70조제2항제1호나목의 비율"로 하고, 같은 항제2호 중 "제64조제1항제2호가목"을 "제2항제2호각목 또는 제64조제1항제1호"로, "3이내"를 "95이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제2호각목"을 "제2항제2호각목"을 "제2항제3호각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재사유"를 "경우"로, "제재의"를 "제재 등의"로, "제재에"를 "제재 등에"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제재면제의"를 "제재 등의 면제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64조, 제64조의2"를 "제63조의2, 제64조"로 한다.

제71조 중 "제재한"을 "제재 등을 한"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독원장"을 "매 월마다 감독원장"으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제7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7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1. 매 영업일 기준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제72조제1항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외화유동성"을 "제64조제1항에 따른 외화유동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외화자산, 부채현황 및 외화유동성 비율"을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제64조의2, 제74조"를 "제74조"로 하고, 같은 조에 제9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4조제1항 중 "제64조의2"를 "제63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 외의 은행이 준수 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이상
 - 2.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70 이상
 - ②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이상
 - 2.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60 이상
 - ③ 제63조의2제1항 본문 및 제92조제9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이 유지하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40 이상
 - 2.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00분의 50 이상
- 제3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위반에 대한 제재에 관한 경과조치) 제7 0조제2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2조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제70조제2항제1호 가목은 부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비율에 100분의 5를 가산한 비율로 하고 제70조제2항제1호 나목은 부칙 제1항 내지 제3항 각호의 비율에 100분의 10을 가산한 비율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	제60조(외국환업무취급기관)
장에서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라 함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	
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u>기관</u> 을	<u>은</u> 행
말한다.	
제62조(등록사항 변경) ① 외국환	<u><삭 제></u>
거래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	
관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국	
내영업소를 신설・폐지하거나	
주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날 7일전까지 감독	
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고에 따른 세부사	
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63조 <u>(환율위험관리)</u> ①·② (생	제63조(외국환포지션 한도관리)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63조의2(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21조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에 대하여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

자산의 비율(이하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비율이라한다)을 100 분의 8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 다. 다만. 직전 반기 종료일 현 재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 만이고 총부채 대비 외화부채 비중이 100분의 5미만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 및 단서의 외화 자산과 외화부채의 범위 및 외 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의 구체 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 하다.

③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금 융위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 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0 0분의 80 미만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서 정한 비율을 변경할 수 있다.

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외화 법시행령 제21조 제4호의 규정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 적용되 지 않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외국 | 제64조(유동성위험관리) ① 제63 환업무취급기관은 외국환거래 에 따라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를 각각 잔존만기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 는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 1. (생략)
- 외화자산 및 부채의 만기 불 일치비율
 - 가. 잔존만기 7일이내의 경우
 에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
 하는 비율 100분의 3이내
 나. (생 략)
- ②·③ (생 략)
- 제64조의2(외화안전자산보유) ① <삭 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액 이상을 외화안전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 1. 1년 이내 만기도래 차입금 × 2/12 × [1-최저차환율]
 - 2. 총 외화자산(직전 분기 대차대조표상의 외화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 ② 제1항에 따른 외화안전자산 의 범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받은 신 용등급이 A등급 또는 이에 준 하는 등급(이하 "A등급" 이라

·.
1. (현행과 같음)
2
<u><삭 제></u>

나.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u>삭</u> 제> 한다)이상인 국가의 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발행한 채권, 중앙 은행 예치금, A등급 이상 회사 채, A등급 이상 금융기관에 대한 예치금 및 이에 준하는 자산 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1년 이내 만기 도래 차입금의 범위는 외화발행 금융채권, 외화차입금, 외화콜 머니, 외화환매조건부채권매도 및 이에 준하는 차입금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차환 율이란 해당금융기관의 약정만 기 1년 이내 차입금(일일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월중 만 기도래금액 대비 약정만기 1년 이내 차입금의 월중 신규 조달 금액의 비율로서 감독원장이 정 하는 기간 중 가장 낮은 3개월 평균 비율을 말한다.
- 5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 지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필 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 다.

제68조(적용배제) ① (생 략)

제68조(적용배제) ① (현행과 같

- ②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대하여는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7조(외화유동성 위험에 대한관리기준은 제외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69조(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3조의 외국환포지션한도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각 호에 따라 감독원장이 제재한다.
 - 1. · 2. (생략)
 - ② (생략)
 - ③ 감독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제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감소등 한도초과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제재를 면제, 유예 또는 해제할 수 있다.
 - ④ (생 략)
- 제70조(외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횟수가 과

$\frac{\diamond}{\Box}$)
②
- <u>제63조의2, 제64조</u>
제69조(외국환포지션한도 위반에
<u> 대한 제재 등)</u> ①
<u>경우에 감독원</u>
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u>한다</u>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u>조치</u>
- <u>제재 등을 감면</u>
④ (현행과 같음)
제70조(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 위반에 대한 제재 등) ①
<u>제63</u> 조의2, 제64조

거 1년동안 <u>2회이하(단</u>, 제64조 제1항제2호가목에서 정하는 비율은 과거 1년간 4회이하)인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따라 사유서 및 달성계획서를 매위반시마다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u>제64</u> 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에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을 위반 하여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3회이상일 경우에는 제64조 및 제65조에 불구하고 동 비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향하여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적용하다.

<신 설>

- 1. (생략)
- 2. (생략)
- 3. 제64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위반하여 위반 횟수가 과거 1년 동안 3회일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금액 이상
 - 가. 1년 이내 만기도래 차입 금 × 3/12 × [1-최저차환 율(제6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차환율)]
 - 나. 총 외화자산의 100분의 3
- 4. (생략)
- ③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음 각 호중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만기 3개 월이내 신규 외화자금 차입(만 기 30일이내 콜머니 제외)을,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기 1년이상 신규 외화대출을 동호에 따른 비율을 달성할 때 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2. (현행 제1호와 같음)3. (현행 제2호와 같음)<박 제>

- 1. 제2항제1호각목 또는 <u>제64조</u> <u>제1항제1호</u>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 안 5회이상일 경우: 100분의 95 이상

 2. <u>제64조제1항제2호가목</u>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반횟수가 과거 1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100분의 경우: 100분의 3이내

 3. <u>제2항제2호각목</u> 또는 제64조 제1항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비율을 위반시 위한횟수가 과거 1
- 년동안 5회이상일 경우 : 100분 의 0이내
- 4. (생략)
- ④ 감독원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u>제재사유</u>에 해당하더라도 국내외 금융·경제여건 악화 등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u>제재의</u> 면제, 유예 또는 기 조치한 <u>제재에</u> 대하여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다만, <u>제재면제의</u> 경우에는 당해 면제 대상을 위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⑤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규정

1 <u>利63</u>
조의2제1항 본문
<u>제70</u> 조
제2항제1호나목의 비율
2. 제2항제2호각목 또는 제64조
제1항제1호
<u>95이상</u>
3. <u>제2항제3호각목</u>
4. (현행과 같음)
4
<u>경우</u>
<u>제재 등의</u>
<u>제재 등에</u>
제재 등의 면제의
(5)

제64조, 제64조의2 및 제65조에 - 제63조의2, 제64조 -----따른 비율을 과거 1년동안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독원장은 당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 하여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보 고의 주기를 단축하는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제71조(제재현황 보고) 감독원장 제71조(제재현황 보고) ------은 제69조 및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 -- <u>제재 등을</u> 한 -----해 제재한 경우에는 그 현황을 매분기말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2조(보고) ① 외국환업무취급 제72조(보고) ① ---------- 매 월마 기관은 다음 각 호를 감독원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독원장----. 1. 매 영업일 기준 외화 유동성 <신 설> 커버리지비율 1. 매 월말 기준 잔존만기별 외 화자산, 부채현황 및 외화유동 ----- 제64조제1 성 비율 현황 항에 따른 외화유동성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4. (현행 제3호와 같음) 3. (생 략) 4. 매 분기말 기준 외화안전자 <삭 제>

산 보유 현황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감독원장은 외국환업무취급	②
기관의 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다	
음 각 호를 감독원장에게 보고	
토록 할 수 있다.	
1. 매 영업일 기준 잔존만기별	1
외화자산, 부채현황 및 외화유	-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
동성 비율 현황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2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	제92조(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
례) ①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례) ①
제10조의2, 제11조부터 제13조	
까지, 제20조, 제23조,제25조부	
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	
제3호 및 제3항, 제26조의2제4	
항,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제3	
9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8조	
까지,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54조의2, 제59조, <u>제64조의2,</u>	<u>제74조</u>
<u>제74조</u> 의 규정은 한국산업은행	
(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례) ① 제4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6조제1항제2호·제3호및 제3항, 제26조의2, 제3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3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제51조, 제52조의2부터 제52조의5까지, 제53조제1항 단서, 제54조, 제59조, 제64조의2, 제74조, 제79조부터 제90조까지의 규정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출입은행"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④ (생 략)

⑨ 제63조의2제1항 본문에도 불
구하고 한국산업은행이 유지히
여야 하는 외화 유동성커버리지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94조(한국수출입은행에 대한 특
례) ①
제63조의2
<u>/1100-12-12</u>
② ~ ④ (현행과 같음)